

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12월 23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2. 9. 평창군수(지역도시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2월 20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12월 23일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지역도시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신규 급수공사 신청시 업종구분이 불분명하여 상수도요금부과 및 징수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업종구분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효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 내용신설 (안 제27조1항)
 - 업무용 : 병영,빈점포,새마을금고(신협포함),농협,수협,추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
 - 영업용 : 주점,슈퍼마켓,닭집,제과점,금융업,전자제품판매,도축장,두부공장,콩나물공장,한의원,침술원,가축병원,창고업,제재소,화원,단란주점,골프장,병원,이·미용업,제조업,제빙업,염색업,도금업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
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조례로써,

○ 금번 제정되는 내용은

- 2002년도 강원도 종합 감사시 지적된 것으로 업종구분이 미약하여 각종민원을 야기시켜 왔으며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던 것을 명문화하여 민원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,
- 신설되는 내용은 문방구, 새마을금고, 농협·축협지사사무소, 신협, 주점, 슈퍼마켓, 닭집, 도축장, 콩나물공장, 두부공장, 한의원, 단란주점, 골프장, 이·미용업소등 입니다.
- 상기내용과 같이 시급함에도 조례개정이 늦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